

제 372 호

1973. 5. 23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444 · 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	
제 770 호	서울특별시 새마을공장에 대한 시세면제에 관한 조례 3
◎ 교 시	
제 75 호	사료성분등록 4
제 76 호	사료성분량 고시 7
제 77 호	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자금운용요강...8
제 78 호	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(개축) 허가17
◎ 공 고	
	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공고제 11호 : 공개 경쟁채용시험에 대한 부정행위 공고.....17
제 96 호	강우토지 : 구획정리사업지구제 4차완지에 정지지정공고...18
제 100 호	3 급전기주입기술자 면허증 갱신18
◎ 예 규	
제 1303 호	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조합 상무이사승인심사기준.....20
◎ 사 령21
	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	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1654

조 **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새마을공장에 대한 시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시장 양택식

1973. 5. 22일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770 호

서울특별시 새마을공장에 대한 시세면제에 관한 조례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농가공산품 개발사업체가 농촌유류 노동인구의 고용증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된 새마을공장에 대하여 지방세 법제 7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면제와 재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취득세의 면제대상) 농가공산품 개발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농가공산품 개발사업체로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된 농가공산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새마을공장을 신축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. 다만 다

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면제만 취득세를 추징한다.

- 1. 새마을공장을 가동하기전에 타인에게 양도한때
- 2. 공장건물을 준공한후 6월 이내에 농가공산품을 생산하지 아니할때
- 3. 새마을공장을 지정된 농가공산품 생산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할때

제 3 조 (재산세의 과년도상) 농가공산품 개발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농가공산품 개발사업체로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된 농가공산품생산에 직접 사용하고있는 새마을공장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. 나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1. 남기개시일 현재 새마을 공장이 휴업하고 있을때
- 2. 지정된 농가 공산품 생산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때

제 4 조 (재산세의 감면기간) 제 3 조의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농가공산품 개발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된 농가공산품 생산을 개시한후의 최초 과세년도로 부터 가산하여 1 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그후 3 년간은 100분의 50 을 감감한다.

제 5 조 (사무처리의 위임) 이 조례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

제리는 구청장에게 의뢰한다.

제 6 조 (면제신청) ① 제 4 조 및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면제 및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면제 또는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이 전항의 신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행기간) 이 조례는 마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일 까지 시행한다.

③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농가공산품 개발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후 새마을 공장이 준공된 것은 취득세 과세의 경우에 한하여 이

조례 시행일에 준공한 것으로 본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75 호

사료성분 등록

사료관리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 등록을 필하였 기 고시함

1973. 5. 16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- (一) 1. 사료공장명 : 천일곡산 공업주식회사 제 2 공장
- 2. 사료공장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5 가 15
- 3. 사료공장대표자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2 의 5
- 4. 사료공장 대표자 : 이 상진
- 5. 사료성분 등록내용

등록번호	사료종류	사 료 용 도	최 소 한		최 대 한		유요기간
			조식비율	조지방	조섬유	조회분	
9-82	배합사료	생후대략 3 - 6개월까지	이상 16.0%	이상 2.5%	이하 10.5%	이하 9.0	73.5.9
9-83	"	생후대략 2개월까지	15.0	2.0	6.0	9.0	75.5.8
9-84	"	고기조성기 배합사료	15.0	2.0	13.0	12.0	"
9-85	"	고기조성 중기 배합사료	13.0	2.0	11.5	11.0	"
9-86	"	고기조성 후기 배합사료	11.0	2.0	10.0	10.0	"
9-87	"	양돈용 농축 배합사료	15.0	2.0	4.5	13.0	"
9-88	"	양돈용 농축 배합사료	15.0	2.0	4.5	13.0	"
<p>(2) 1. 사료공장명 : 민산농원 주식회사 사료공장 2. 사료공장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촌동 203 3. 대표자 : 김 영 오</p>							
등록번호	사료종류	사 료 용 도	최 소 한		최 대 한		유요기간
			조식비율	조지방	조섬유	조회분	
9-89	배합사료	부요기 완성용	이상 16.0%	이상 2.5%	이하 6.0%	이하 10.0%	73.5.9
9-90	"	기 초 사 료	50.0	5.0	2.5	20.0	75.5.8
9-91	"	기 초 사 료	30.0	3.0	8.0	7.0	
9-92	"	배 합 사 료	16.0	2.0	4.5	13.0	
<p>(3) 1. 사료공장명 : 서울미원 주식회사 영등포공장 2. 사료공장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629 3. 대표자 : 이 류</p>							

4. 사료성분 통칙내용

등록번호	사료종류	사 료 용 도	최 소 한		최 대 한		유요기전
			단백질 이상	조지방 이상	조섬유 이하	조회분 이하	
9-93	배합사료	부화후 대략 6주까지	10.0%	2.5%	6.0%	9.0%	73.5.9
9-94	"	" 7-12주까지	16.0	2.5	7.0	10.0	75.5.8
9-95	"	" 13-초산까지	12.0	2.5	7.5	10.0	"
9-96	"	" 13-초산까지	12.0	2.5	7.5	10.0	"
9-97	"	초산후부터 대략 20주까지	15.0	2.0	7.0	13.0	"
9-98	"	초산후대략 21-35주까지	14.5	2.0	7.0	13.0	"
9-99	"	초산후대략 36주이상	14.0	2.0	8.0	13.0	"
9-100	"	초산후대략 20주까지	15.0	2.0	7.0	13.0	"
9-101	"	" "	15.0	2.0	7.0	13.0	"
9-102	"	부화후 대략 4주까지	19.0	2.5	6.0	9.0	"
9-103	"	부화후 대략 4주이상	16.0	2.5	6.0	10.0	"
9-104	"	" " "	16.0	2.5	6.0	10.0	"
9-105	"	" " "	16.0	2.5	6.0	10.0	"
9-106	"	" " "	16.0	2.5	6.0	10.0	"
9-107	"	양 계 용	16.0	2.0	4.5	13.0	"
9-108	"	생후대략 2개월까지	18.0	2.0	6.0	9.0	"
9-109	"	" 2-4개월까지	15.0	2.0	7.0	9.0	"
9-110	"	생후대략 4개월이상의비육 돈및 8개월까지의 씨돼지	12.0	2.0	8.0	10.0	"
9-111	"	생후대략 9개월이되는씨돼지	12.0	2.0	11.0	11.0	"

등록번호	사료종류	사 료 용 도	최 소 한				유 효 기 간
			단백질	조지방	조인유	조회분	
9-112	배합사료	양 온 용	16.0	2.0	4.5	13.0	
9-113	"	생후대략 3개월까지	19.0	2.5	8.0	9.0	
9-114	"	생후대략 3 - 6개월까지	16.0	2.5	10.0	9.0	
9-115	"	생후대략 6 - 18개월까지	12.0	2.0	12.0	11.0	
9-116	"	" 18개월이상	13.0	2.0	13.0	12.0	
9-117	"	" "	13.0	2.0	13.0	12.0	
9-118	"	고 기 소 용	15.0	2.0	13.0	12.0	
9-119	"	"	13.0	2.0	11.5	11.0	
9-120	"	"	11.0	2.0	10.0	10.0	
9-121	"	축 우 용	11.0	2.0	4.5	12.0	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76 호

사 료 성 분 량 고 시

사료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

다

1. 사료공장명 : 신촌사료주식회사
2. 사료공장소재지 :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동93번지
3. 사료공장대표자 : 강 금 로

다음과같이 사료성분등록을 원하건가 고시한다.

1973년 5월 21일

서울특별시장

음

등록번호	사료의명칭	사 료 의 용 도	사 료 의 성 분				유 효 기 간
			최 소 량	최 대 량			
			단백질	조지방	조인유	조회분	
6-10	전배합사료	생후대략 3개월까지	%이상 19.0	%이상 2.5	%이하 8.0	%이하 9.0	73.5.21부터 75.5.20까지
6-11	결소중 배합사료	생후대략3-6개월까지	15.0	2.5	10.0	9.0	"

등록 번호	사료의 명칭	사료의 용도	사료의 성분				유효기간
			최소량		최대량		
			주단백질	조지방	조섬유	조회분	
6-12	겉소큰송아지 배합사료	생후내략 6-18개월까지	12.0	2.0	12.0	11.0	73.5.21부터 75.5.20까지
6-13	겉소용배합사료	생후내략 18개월이상	13.0	2.0	13.0	12.0	〃
6-14	겉메기돼지배합사료	생후내략 2개월까지	18.0	2.0	6.5	9.0	〃
6-15	이린돼지배합사료	생후내략 2-4개월	15.0	2.0	7.0	9.0	〃
6-16	송돼지배합사료	생후내략 4개월이상의 비육돈및 8개월까지의 새끼 돼지	12.0	2.0	8.0	10.0	〃
6-17	새끼돼지배합사료	생후내략 9개월되는새끼돼지	12.0	2.0	11.0	11.0	〃
6-18	산란조가용배합사료	브로일러 종계용배합사료	15.0	2.0	7.0	13.0	〃
6-19	능축배합사료	양지용농축사료	16.0	2.0	4.5	13.0	〃

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자금
운용요강을 다음과같이 지정한다.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77 호

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
조합사업자금운용요강

73.5.21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요강은 중소기업협
동조합사업자금(이하 "자금"이라
한다)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
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원) 이 요강에 의한 지원
자금의 재원은 서울특별시 재정자

금(운전자금및시설자금)에 의한
대하금화 그회수자금을 재원으로
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① 자금지원대상은
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서울특
별시장(이하 시장이라 한다)이
설립인가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
동조합(이하 조합이라함)이 동법
제31조제1항(제7호제외)의 규정
범위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한
다.

② 전항의 지원대상은 조합원의 일
종별 구성의 다양성등 특별한 사

유가 없는 한 수혜조합원이 총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.

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.

- 1. 지원자금을 4개월이상 활용치 못한 경우
- 2. 임원이 2개월이상 결원중인 경우
- 3. 지원자금이 연체중에 있는 경우
- 4. 부실운영으로 시장 또는 경교 조치중인 경우
- 5. 시장이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 4 조 (자금지원) 시장은 조합별 지원자금한도액을 정하여 중소기업은행장 (이하 은행장이라 한다) 에게 통보한다.

제 5 조 (지원비율) 자금은 총소요자금의 70%까지 지원할 수 있다. 다만 수입의 경우에 한하여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90%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제 6 조 (지원기간) ①운전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
 ②시설자금의 지원기간은 1년거치 4년이하로 한다.
 ③시장은 지원기간을 전 2항의 기

간내로 정하였을 경우 조합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서울특별시용자대상신청심의위원회 (이하 「심의위원회」라 한다) 의 의견을 거쳐 전 2항의 용자기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제 7 조 (대하및용자절차) ①은행장은 자금대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신청서에 의하여 다음 조건으로 은행장에게 자금을 대하한다.

- 1. 대하기간: 5년
- 2. 대하금리: 년 9% (년 2회복합)
- 3. 상환방법: 5년후 일시상환
- 4. 대하도: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자금

②용자절차는 다음각호에 의한다.

- 1. 시장은 각 조합으로부터 사업계획서와 자금신청서를 제출받아 「심의위원회」의 의견을 거쳐 조합별 한도액과 용자기간을 정하여 은행장에게 통보한다.
- 2. 은행장은 전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제권보전하고 대출한다.
- 3. 용자조건은 다음과 같다.
가. 용자한도: 10,000,000원이하
나. 용자금리: 년 12%

<p>다. 상환방법 : 용자기간종료 즉시 일시상환</p> <p>제 8 조 (채권보전) 은 행 장 은 조 합 에 자 금 을 대 출 할 때 에 는 시 설 자 금 은 기 성 고 에 따 라 사 전 채 권 보 전 책 을 취 하 여 야 한 다 .</p> <p>제 9 조 (자 금 사 용 의 제 한 및 회 수) ① 조 합 은 대 출 된 자 금 을 즉 시 환 용 하 시 야 하 며 지 원 목 외 에 사 용 할 수 없 다 . ② 지 원 된 자 금 에 결 산 금 이 발 생 하 였 을 때 에 는 지 체 없 이 입 보 임 원 의 연 대 책 임 하 여 보 전 하 여 야 한 다 . ③ 은 행 장 은 자 금 이 지 원 된 조 합 에 대 한 제 3 조 제 3 항 3 사 유 가 발 생 하 였 을 때 에 는 대 출 된 자 금 을 지 체 없 이 회 수 도 록 하 고 이 를 시 장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.</p> <p>제 10 조 (사 후 관 리) ① 시 장 과 은 행 장 은 자 금 이 지 원 목 외 에 따 라 사 용 되 고 있 는 지 에 대 한 사 후 관 리 를 한 다 . ② 은 행 장 은 전 항 의 사 후 관 리 를 위 하 여 관 계 증빙 서 류 또는 필 요 한 보 고 서 류 를 강 구 하 거 나 수 시 확 인 조 사 또는 회 계 감 사 를 실 시 할 수 있 다 . ③ 은 행 장 은 지 원 된 자 금 의 운 용 이</p>	<p>부 당 하 다 고 인 정 또는 연 체 되 었 을 때 에 는 지 체 없 이 배 책 을 강 구 하 고 시 장 에 게 보 고 하 여 야 한 다 .</p> <p>제 11 조 (보 고) ① 자 금 이 지 원 된 조 합 은 사 업 이 완 료 된 때 에 는 사 업 완 료 보 고 서 를 사 업 종 료 후 15 일 이 내 에 시 장 및 은 행 장 에 게 별 표 3 양 식 에 의 거 제 출 하 여 야 한 다 . ② 시 설 자 금 이 지 원 된 조 합 은 분 기 별 추 진 상 황 보 고 서 를 분 기 만 료 익 월 15 일 까 지 시 장 및 은 행 장 에 게 별 표 2 양 식 에 의 거 제 출 하 여 야 한 다 . ③ 은 행 장 은 본 자 금 대 출 및 회 수 가 있 을 시 는 시 장 에 게 별 표 4 양 식 으 로 대 출 및 회 수 상 황 보 고 하 여 야 한 다 .</p> <p>제 12 조 (준 용 규 정) 이 요 강 에 규 정 되 지 않 은 사 항 은 상 공 부 고 시 제 9153 호 (72.9.19) 및 은 행 장 이 정 하 는 바 에 의 하 되 은 행 장 이 정 하 는 사 항 에 대 하 여 는 시 장 과 사 전 협의 하 여 야 한 다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(1) 이 요 강 은 고 시 한 날 로 부 터 시 행 한 다 . (2) 이 요 강 시 행 이 전 에 이미 대 하 밧 대 출 된 자 금 은 이 요 강 에 외 한 운 전 자 금 으 로 대 하 밧 대 출 된 것 으 로 본다 . (3) 이 요 강 시 행 이 전 에 제 정 된 서 울 특 별 시 중 소 기 업 협 동 조 한 공 동 사 회 자 금 운 용 요 강 (서 울 특 별 시 공 고 제 137 호) 은 이 를 폐 지 한 다 .</p>
---	---

별표 1

수신: 서울특별시

197

참조: 공업과장

제목: 조합사업자금 배정신청서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자금 운용요강
제 7 조 2 항 규 정 에 의거 동 자금을 배정받고자 별첨과
같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

첨부: 1. 사업계획서

2. 대차대조표 (또는 시산표)

3. 기타 증빙서류 건 끝

○ ○ ○ 협 동 조 합

이 사 장

(인)

7. 예상효과 (생산, 판매, 수출, 군납, 단체수의 계약물가 안건
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)

8. 사업추진계획 (일정표)

9. 상환 계획

10. 기타 참고사항

- (1) 수출, 군납, 단체수의 계약 등의 계획 및 실적일 기재
- (2) 수리조합원별 내역
- (3) 기타 자금회전과 신용성을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
별첨 2

수신: 서울특별시장

참조: 공업과장

제주: 사업현황보고(유기별 보고)

당 조합에서 배정받은 지원자금에 의한 사업의 진행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1. 배정일자 (공업 1332 -)

2. 배정금액

3. 대출일자

4. 대출금액

5. 상환일자

6. 상환금액

7. 사업집행 실적

(사업량, 사업효과물 당초계획과 대비 설명)

첨부: 관계증빙서류 부 끝

○ ○ ○ 조 합

이 사 장

(인)

"별표 3"

수 신 : 서울특별시

참 조 : 공업과장

제 목 : 사업(완로) 보고

당 조합에서 배정받은 지원자금에 의한 사업이 완료되었거
보고합니다.

1. 비정일자 (공업 1332-)
2. 비정금액
3. 대출일자
4. 대출금액
5. 상환일자
6. 상환금액
7. 사업진행 실적

(사업량 사업효과를 당초계획과 대비 설명할것)

첨 부 : 관계 증명서류

무 끝

조 합

이 사 장

(인)

별표 4

수 신 : 서울특별시

참 조 : 공업과장

제 하 :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 상황보고

귀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사업자금을 다음과 같이 대출 또는 회수하였기 보고합니다.

다 음 (년 월 일현재)

조 합 명	대 출 상 황				회 수 상 황		
	배정액	대출액	대출일자	회수에정일	회수액	회수일	회수일 경과된 미회수액

<p>서울특별시고시 제 78 호</p> <p>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(개 축) 허가</p> <p>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 (개 축) 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하천법 제 25 조 제 4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</p> <p>1973. 5. 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 <p>1. 허가년월일: 1973. 5.22.</p> <p>2. 위치: 서대문구남가좌동용계천 (용연교 - 사천교)</p> <p>3. 목적: 구획정리 지구내의 25 미터 계획도로 확보 및 하천비방 개수</p> <p>4. 규모: 길이: 1,630 m 폭: 25 m ~ 6 m</p> <p>5. 피허가자: 서울특별시서대문구남가좌동32번지 용남토지구획정리조합 현장소장 김 경 근</p>		<p>6. 착공년월일: 허가일로 부터 1 개월 이내</p> <p>7. 준공년월일: 착공일로 부터 3 개월 이내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공 고</div> <p>◎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11 호</p> <p>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공고제 7 호 (73.4.13) 에 의거 1973.5.6 시행 제 2 회 4 , 5 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 다음 사람들은 시험장지 을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6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 후 3년간인 1973.5.6-1978.5.5 가 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가격을 정지할것을 공고한다.</p> <p>1973. 5. .</p> <p>서울특별시장</p>			
<p>1. 응시자격 정지처분자 명단</p>					
직 열	응시번호	성 명	생 년 월 일	주민등록번호	주 소
5 규 행정직	04339	박철선	1939.7.13	110919-112135	중구필동 2 가 28

구	구	성명	생년월일	주민등록번호	주소
5	구	김용강	1950.12.6	171213-107463	건북교 창군신평면반릉리 166
5	구	전정희	1948.11.27	171108-104795	건북정 읍시영원읍신병동389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96 호

당우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
제 4 차 환지에정지정공고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방우토
지구획정리지구내 토지에 대하여
구획정리사업법제 47 조 및 제 55 조
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
관한 규정제 25 조 제 11 항 제 3 호
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도서와 같
이 제 4 차 환지계획을 수립 인가
하고 환지에정지를 등번호 제 56 조의
규정에 의거 지정하여 등번호 제 57 조
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수익
의 권한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
계인에게 부여합니다.

다만, 정지공사와 또는 다른 사유
로 인하여 환지의 사용 수익을
할 수 없는 토지는 공작권고 및

다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사용
수익을 하게 됩니다.

2. 환지에정지정서 및 지정도면은
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제 1 과
및 성북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
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
게 합니다.
3. 이 공고에 따른 서류송달은 별도
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될 것이니 미수
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
게 대하여는 이 공도로 가름합니다.

1973. . .
서울특별시장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100 호

3 급전기주임기술자면허증정신
대통령령 제 6479 호(73.1.27) 로
개정된 전기주임기술자자격검정령

<p>부칙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3 급 전기주입 기술자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다음과 같이 갱신 교부함을 공고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973. 5.21. 서울특별시</p> <p>1. 갱신대상 : 1973.1.27 이전 상공부</p>	<p>장관이 발급한 3 급전기주입 기술자면허증 소지자로서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전월 2. 갱신신청 접수기간 및 시간 가. 1 차접수 및 교부 : 아래와 같이 일별 면허번호수에 의함.</p> <p>(1) 면허증 갱신 신청접수 및 교부일정 (73.6.4-6.25 까지)</p>
--	--

접수교부일		신청서접수구면허번호		접수교부일		신청서접수구면허번호	
월	일	번호부터	번호까지	월	일	번호부터	번호까지
6	4	1	50	6	14	551	650
6	5	51	100	6	15	651	750
6	6	101	150	6	18	751	850
6	7	151	200	6	19	851	950
6	8	201	250	6	20	951	1,050
6	11	251	350	6	21	1,051	1,150
6	12	351	450	6	22	1,151	1,250
6	13	451	550	6	25	1,251	1,350

<p>나. 접수 및 교부시간</p> <p>(1) 신청서접수시간 : 10:00-12:00</p> <p>(2) 면허증교부시간 : 15:00-17:00</p> <p>다. 2 차접수기간 : 1973.7.26-10:00 -7.26 18:00 (1 일간)</p>	<p>3. 제한서류</p> <p>가. 갱신신청서 (당시 연도(아래) 비부) 1 통</p> <p>나. 주민등록초본 1 통 (공표일 이후 발급된 분에 한함)</p>
--	---

- 다. 면허증 원본 1 통
 - 라. 사진 4 매 (3 개월이내 촬영한 3 cm X 4 cm)
 - 마. 서울특별시 수입증서 1,000 원
4. 접수 및 교부장소 : 서울특별시시민회

예 규

◎ 서울특별시예규 제 1303 호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3 조 제 3 항 및 준법시행령 제 1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행하는 사무의사의 인명 승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1. 승인심사기준

가.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44 조 제 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

나.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.

- 1) 연합회의 과장급 이상으로 3년이상, 또는 조합의 부장급 (부직제가 없는 조합은 과장급)

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자.

다만 조합의 설립시기가 5년 미만일때 설립과 동시 당해 조합의 위치 이상의 직에 있던 자는 예외로 한다.

- (2)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나 4급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자.
- (3) 정부관리기업체 과장급 또는 법인기업체 (상시 종업원 100명 이상) 부장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.
- (4) 금융기관의 대리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.
- (5) 영관급이상 장교로 2년이상 복무한 후 예편된 자.
- (6)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직에 2년이상 근무한 자.
- (7)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자.
- (8) 전 각호의 1에 준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 특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.

<p>서울특별시장이 특히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자라고 함은 전차호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요근무 연한이 미달하는 자라도 동인이 업계의 신망이 두텁고 조항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.</p>	<p>중 로 구 지방행정서기보 남궁시중 통계과 근무를 명함.</p> <p>위생연구소 지상행정주사 김 응 숙 영등포보건의소 근무를 명함.</p> <p>영등포구보건의소 지방행정주사 최 하 진 위생연구소 근무를 명함.</p> <p>중 구 지방행정주사 박 성 훈 시민과 근무를 명함.</p> <p>구회정리제2과 지방행정주사부 홍 성 계 시민과 근무를 명함.</p> <p>총 무 과 지방미서4급무 박 상 근 (환경과 결무) 위생연구소 결무를 명함. 단, 검우처 근무를 3남.</p> <p>◎ 1973 . 5 . 21</p> <p>주내건설과 지방기계기관보 정석순 지방공무원법 제 63조제 1항 3호규정 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.</p> <p>농 정 과 지방행정사무관 최영식 지방공무원법제 63조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.</p> <p>청소제 2 과 지방행정사무관 장영순 농정과 농정계정에 보함.</p>
<p>사 명</p>	
<p>◎ 1973 . 5 . 18</p> <p>서대문구 (남부 지방행정주사 이성모 건설 파견중) 남부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</p> <p>종로구 (경리과 지방행정주사부 강영태 과 견 중) 경리과 근무를 명함.</p> <p>마포구 (중구파견중) 지방행정주사부 이상진 중구 근무를 명함.</p> <p>영등포구 (새마을사 지방행정서기 조재혁 희생회회관파견중) 새마을사회복지회관 근무를 명함.</p> <p>중구 (성북구파견중) 지방행정서기보 하종학 성북구 근무를 명함.</p>	

방 호 과 지방행정사무관 이 유 성
 목지물 명함.
 청소제 2 과 처리제 장에 보람.

◎ 1973 . 5 . 22

마포병원 지방행정주사 윤 회 균
 양노원 근무를 명함.

마포병원 지방행정서기 최 중 집
 마포구 근무를 명함.

마포병원 지방기관수 김 영 수
 아동병원 파견근무를 명함

마포병원 난방공 권 일 현
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.

서울특별시